

의안번호	2219064
의 퇴 인	손술의원
회 답 일	2026. 6. 22.
추계번호	26C2706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2(표준보수지침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정보수의 기준,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고, 이를 보급·권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5조의3(안전·보건에 관한 조치)	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3	안 제25조의5(실태 조사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공정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,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2(표준보수지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5조의3(안전·보건에 관한 조치)	
	안 제25조의5(실태 조사 등)	

2. 상세 사유

□ 콘텐츠산업 종사자 표준보수지침 마련(안 제2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정보수의 기준,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, 그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콘텐츠산업은 장르별로 산업환경, 노동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, 이를 위한 논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지침 마련을 위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산업 장르 중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한 산업은 영화가 있고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3¹⁾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은 2015년부터 2025년에 걸쳐 제정이 이루어졌고, 이를 위하여 총 380.5백만원이 소요되었음

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(안 제25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법문상 지원 형태를 재정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,²⁾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현시점에서 지원금액 및 규모 등을 가정하는 것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1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3(표준보수에 관한 지침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(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관한 지침(이하 "표준보수지침"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, 이를 보급·권장하여야 한다.
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2)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결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

□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 등에 관한 실태 조사(안 제25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실태,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,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·보건조치 현황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「콘텐츠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조사연구」를 실시하고 있고,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실태에 관해서는 표준계약서 활용비율 등 기초적인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- 다만, 표준계약서 사용실태 외 개정안에 따른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범위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